

예산군사무의 읍·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□ 개정이유

- 건축법 제171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처리하면 사무를 읍·면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편의 도모.

□ 주요골자

- 군수의 권한중 다음 사항을 읍·면장에게 위임 처리
 -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
 -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
 - 건축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용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

□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117조제4항이 “군수의 다음 각호의 권한을 읍·면장에게 위임한다”로 되어 있어 당연히 읍·면에서 처리하던 것을 ’97. 9. 9 동 조항이 “읍·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”로 개정됨으로써 계속하여 읍·면에서 처리도록 하고자 위임사항에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